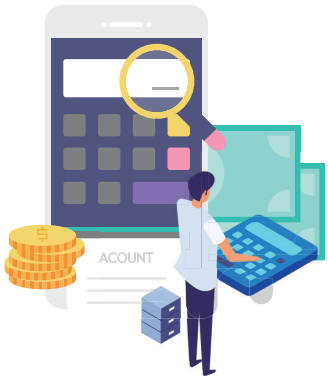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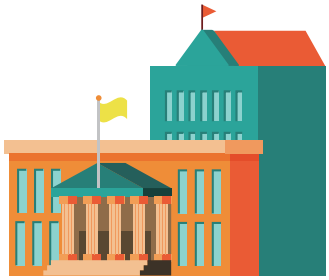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541-01

NATIONAL TAX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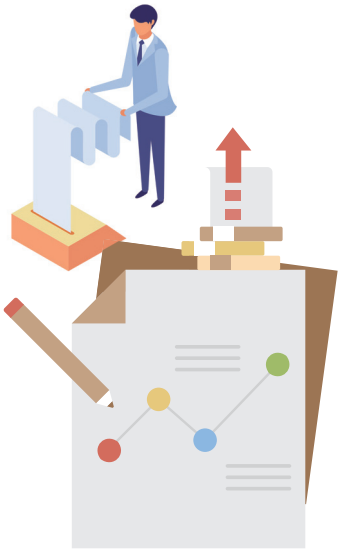


원천징수 실무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用 |

2020. 5.





국 세 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원천징수 실무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用 |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성실한 납세가 먼저입니다.



대한민국을 키워나가는 세금 !
#국세청 #대한민국 #세금 #성실납세

[2019년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수상 작품]

차례

Ⅰ 원천징수 개요

1. 원천징수 ····· 3
2. 원천징수 일정표 ····· 3
3. 원천징수 의무자 ····· 4
4. 불이행시 제재 ····· 4
5. 원천징수 대상 소득 ····· 5
6.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5
7. 원천징수 세율 ····· 6
8. 원천징수 제외 대상 ····· 7
9. 원천징수 시기 ····· 8
10.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시기 ····· 10
11.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11
12.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 유의사항 ····· 13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세 신고·납부 절차 ····· 19
2. 원천징수 세액 선택 ····· 21
3.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 22
4. 조정환급 ····· 25
5.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26
6.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 30
7. 홈택스 신고방법 ····· 32

Ⅲ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41
2. 지급명세서 수정 ····· 42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42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1. 근로소득이란 ····· 45
2.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 46
3.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 ····· 47
4.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 48
5. 근로소득금액 ····· 53
6. 인적공제 ····· 54
7. 연금보험료 공제 ····· 55
8. 특별 소득공제 ····· 55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57
10. 산출세액 ····· 59
11.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 60
12. 특별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62
13. 월세액 세액공제 ····· 65

차례

V 기타소득 원천징수

1. 기타소득이란 ····· 69
2. 기타소득 비과세 ····· 70
3. 지자체 공모전 등 개최시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 71
4. 필요경비율 및 세율 ····· 72
5. 원천징수 방법 ····· 73
6.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 73

VI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 77
2. 원천징수 의무자 ····· 78
3. 원천징수 방법 ····· 78
4.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79

Ⅰ 원천징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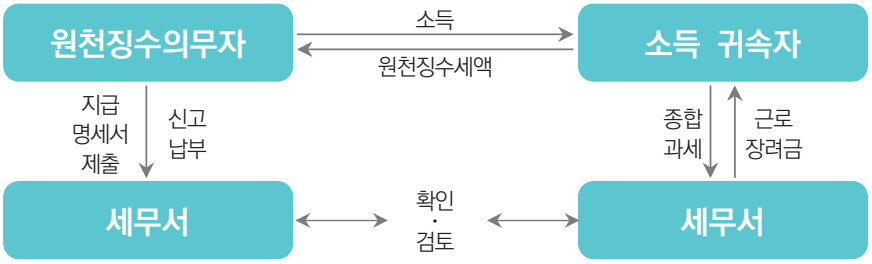
1. 원천징수
2. 원천징수 일정표
3. 원천징수 의무자
4. 불이행시 제재
5. 원천징수 대상 소득
6.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7. 원천징수 세율
8. 원천징수 제외 대상
9. 원천징수 시기
10.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시기
11.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12.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 유의사항



Ⅰ 원천징수 개요

1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원천징수 일정표

● 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며, 연간 원천징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	12	1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 납부									
1.10. 반기별 납부신고 (7~12월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말정산					7.10. 반기별 납부 신고 (1~6월분)			1.10. 반기별 납부 신고 (7~12월분)
연금소득 연말정산	2월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자 · 배당 · 기타 · 연금)	3.10.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 · 퇴직 · 사업 · 종교인소득)		~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6.30. 반기별납부 신청기간	~7.31. 반기별납부 승인통보		~12.31. 반기별납부 신청기간	~1.31. 반기별납부 승인통보

3 원천징수 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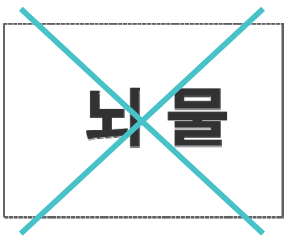
-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 ▸ 예를 들어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인간 금전거래
(원천징수 대상)



경품 당첨
(원천징수 대상)



뇌물
(원천징수 대상 아님)

4 불이행시 제재

-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5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소득을 지급받는 자 및 소득종류 등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6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 분	과세표준	세 액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20%

● 또한 소득(법인)세액의 10%를 징수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액의 10%

7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 분	세 액
이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밖의 이자소득	14%	
배 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밖의 배당소득	14%	
사 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봉사료 5%
근 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 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10년 초과시 60%)	
	퇴직연금·사적연금	3~5%, 4%	
기 타	복권당첨금	20%	3억원초과 30%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분 종교인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20%	봉사료 5%
퇴 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8 원천징수 제외 대상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배제(소법 §155)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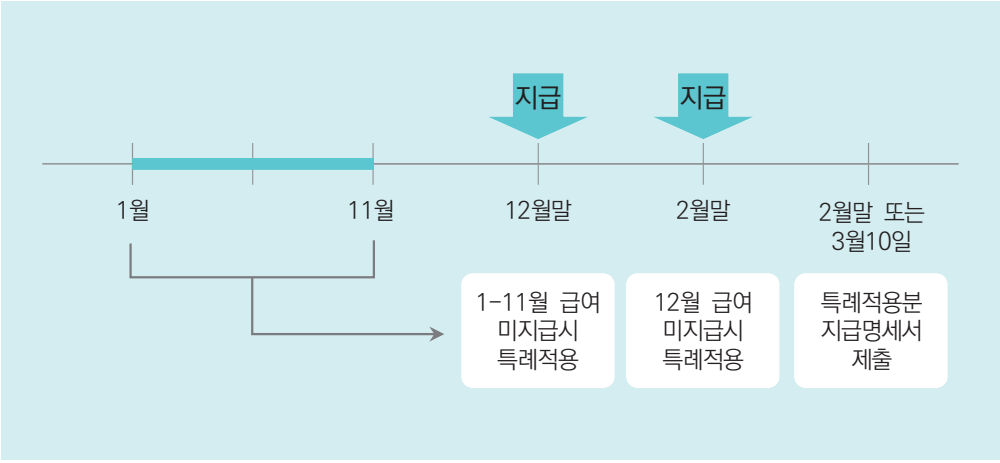
-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경우(소법 §85③)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 소액 부징수
  -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 다만,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9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근로, 사업연말, 퇴직)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례

회사의 임금체불로 근로자에게 19년 10월~12월 급여를 연말정산할 때 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 19년 10월분, 11월분→ 20년 1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10월분과 1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별도 작성) 납부 이행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10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1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15,000,000	500,000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1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1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15,000,000	500,000					

• 19년 12월분 → 20년 3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3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이행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20년 0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15,000,000	500,000					

10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시기

-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 상	교 부 시 기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 ※ 다만,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즉시 교부
중도 퇴직자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일용 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퇴직소득	그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

- 근로·퇴직소득 외의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분		교 부 시 기
이자소득 · 배당소득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제외 소득	지급하는 때
연금소득	국민연금 · 직역연금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퇴직연금 · 사적연금	지급하는 때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교인 소득 외	지급하는 때

11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3%+(과소·무납부세액×2.5/10,000*×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 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구 분	가 산 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 계산방법은 국세와 동일

※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X → 가산세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X + 납부 ○ → 가산세 X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12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 유의사항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본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부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교육청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교육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A학교의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납부 및 **교육청 명의**로 지급명세서 제출

구 분	교직원 급여	강사료	원천징수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A학교	-	기타소득 원천징수	A학교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을 포함하여 **교육청에서**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교육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년 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20년 5월말에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두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구 분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연월
4월 급여	매월	'20년 4월	'20년 5월	20.06.10
5월 급여	매월	'20년 5월	'20년 5월	20.06.10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A02)과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A04) 내용을 구분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2019.12.15. 중도퇴사자 (1명 연간 총지급액 10,000,000)
- 2019.12.31. 계속근로자 (10명 연간 총지급액 120,000,000)

착오 기재(중복신고)한 경우	정상적인 경우
1) 2020.1.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중도퇴사(A02) 1명 10,000,000 2) 2020.3.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연말정산(A04) 11명 130,000,000*	1) 2020.1.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중도퇴사(A02) 1명 10,000,000 2) 2020.3.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연말정산(A04) 10명 120,000,000

* 중도퇴사 1명 지급액 10,000,000원을 중도퇴사(A02)와 연말정산(A04)에 중복 신고

● 당초 신고서 수정신고 후, 해당 월 원천세 신고 시 수정신고세액(A90)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 원천세 수정신고서 제출 없이 수정신고세액(A90)란에만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 납부하는 경우

사례

- 2020.6월 A기관의 근로자 홍길동의 5월분 근로소득 3,000,000원(소득세 1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0.7.10. 원천세 수정신고 및 납부
  - 당초 2020.5월분 A기관의 급여 지급 9명 지급액 27,000,000원(소득세 900,000원)
- 2020.6월분 A기관의 급여 지급 10명 지급액 30,000,000원(소득세 1,000,000원)

1) 수정신고(5월분)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20년 5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20년 5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9 10	27,000,000 30,000,000	900,000 1,000,000					
	중도퇴사	A02								
	가감계	A10	9 10	27,000,000 30,000,000	900,000 1,000,000				900,000 1,000,000	

2) 매월 신고(6월분)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20년 6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20년 6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30,000,000	1,0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10	30,000,000	1,000,000				1,000,000	
수정신고(세액)			A90			100,000				100,000	
총합계			A99	10	30,000,000	1,100,000				1,100,000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천징수 신고 관련 주요 오류 유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징수세액만 납부	해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귀속연월, 지급연월 등을 잘못 구분하여 신고 · 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합산하여 신고 · 납부
당월 2회 이상 급여 지급하면서 지급시마다 따로 신고 · 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합산하여 신고 ·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누락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제출
중도퇴사자에 대한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기한(다음연도 3월10일)까지 계속 근로자분과 함께 제출
계약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일반 근로자와 함께 제출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작성 · 제출

● 원천세 신고서 입력 기준값·한도값 신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력시 오류 축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준값·최대값 신설

* (기준값) 원천징수의무자 90%이상이 충족하는 인원수·지급액
(최대값) 원천세 신고 자료 분석을 토대로 입력 가능한 최대값

(기준값) 기준값 설정하여 범위내 입력 시 정상 처리, 초과값 입력 시 팝업창으로 안내하여 자가검증 할 수 있도록 설정

(최대값)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 입력 불가로 입력값 적정 여부 재확인 필요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세 신고·납부 절차
2. 원천징수 세액 선택
3.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4. 조정환급
5.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6.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7. 홈택스 신고방법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세 신고·납부 절차

» 원천세 신고·납부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

- **(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방법이 있으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납부하는 방법이 보다 편리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대상자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납세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자
개인	개 인		주된 사업장(주소지) 소재지	개 인
법인	일반법인	본 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본점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점	지점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점
		(본점일괄납부신청) 해당 지점	본점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본점
	사업자단위등록	본 점	본점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본점

※ 국가 및 법인의 경우 본점(본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월별신고서 작성 방법

- 「① **신고구분**」

①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 신고서는 "수정"에,
-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를 함
  ※ 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소득처분"에 "○"표시할 수 없음
-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 표시
-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란에 "○" 표시하고
  「㉑환급신청액」 기재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

- 「② **귀속연월**」

② 귀속연월	년 월

- 소득발생 연월을 기재.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연월은
  대상 소득에 대한 당초 연말정산 귀속연월(2020년 귀속 → 2021년 2월)을 기재
  ※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1월 또는 7월)을 기재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분에 대해 작성 제출

- 「③ **지급연월**」

③ 지급연월	년 월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월을 기재
- 20년 2월분 소득을 20년 3월에 지급하는 경우 → 귀속연월 : 2020년 2월, 지급연월 : 2020년 3월
- 20년 2월분 소득을 20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 귀속연월 : 2020년 2월, 지급연월 : 2020년 2월
  ※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6월, 12월)을 기재

- 「④ **인원**」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④ 인원」 란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원수를 기재

● 「⑤ **총지급액**」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⑤ 총지급액」 란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

● 「⑥ **소득세 등**」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
- 농어촌특별세

구분	과세표준	농특세
이자·배당소득	조특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	과세표준×10%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20%

2 원천징수 세액 선택

●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한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액 비율을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변경된 비율을 계속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 적용방법

▸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 신청한 경우 조정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합니다.

3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 분납 대상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 징수가 가능합니다 (소법 §137④).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 분납 방법

- 근로자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을 표시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소득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무처 명칭	(주)국세	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 KR)
근무기간	2020.1.1. ~ 2020.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의 분납 신청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보관합니다.
- 다만, 분납 신청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 퇴사(전출)하는 경우 퇴사(전출)시 분납금액 전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분납 관련 신고서 작성사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		납 부			비 고
	① 총지급액	② 소득세	③ 3월10일	④ 4월10일	⑤ 5월10일	
합 계	330,000,000	△200,000	△800,000	300,000	300,000	
김○○	100,000,000	600,000	200,000	200,000	200,000	분납신청 O
이○○	80,000,000	△600,000	△600,000			
박○○	70,0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분납신청 O
최○○	50,000,000	△300,000	△300,000			
정○○	30,000,000	△200,000	△200,000			

● **월별 근로소득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급여 지급	인 원	총지급액	원천징수 소득세 ⑥	비고
2월	5	80,000,000	600,000	3.10. 신고
3월	5	50,000,000	500,000	4.10. 신고
4월	5	40,000,000	400,000	5.10. 신고

➜ **3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80,000,000	600,000	⑥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①	②					
	연말정산 합 계	A04	5	330,000,000	△200,000					
	연말정산 분납금액	A05	2		600,000	④ +⑤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800,000	③				
	가 감 계	A10	10	410,000,000	△200,000	③ +⑥				

* 연말정산 결과는 A04 란에 기재. '소득세 등' A04 = A05 + A06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 A04),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4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50,000,000	5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300,000					
	연말정산 분납금액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300,000	4				
	가 감 계	A10	5	50,000,000	800,000	A01(500,000) + A06(300,000)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음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 **5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40,000,000	4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300,000					
	연말정산 분납금액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300,000	5				
	가 감 계	A10	5	40,000,000	700,000	A01(400,000) + A06(300,000)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음.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4 조정환급

» 개념

- 원천징수 세액 중 다른 세목간에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환급할 세액과 상계하여 차감후 세액을 납부합니다.
-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사례

조정환급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100만원이고, 기타소득세 1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100만원(❷환급세액 조정란의 ⑮일반환급에 기재)으로 기타소득세 10만원(⑲당월조정환급세액에 기재)을 조정환급하고 남은 근로소득세 90만원에 대해 ⑳차월이월환급세액 또는 ㉑환급신청액(세무서에 연말정산분 환급 신청시)에 기재함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12,000,000	45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10	144,000,000	△1,450,000					
		연말정산 분납신청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1,450,000					
		가감계	A10	20	156,000,000	△1,000,00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500,000	100,000					
		가감계	A40	1	500,000	100,000			100,000		
총합계			A99	21	156,500,000	100,000			100,000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 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합병 등				
			1,000,000				1,000,000	100,000	900,000	

5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수정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합니다.

» 경정 등의 청구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내용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신고기한(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 근로소득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구 분	원천징수의무자	근 로 자
제출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 ②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수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④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시 당초분,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⑤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 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당초분, 수정분) ③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시 당초분,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④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제 출 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작성 사례

'20.08월분 급여를 2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1명,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20.11.10. 이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당초 원천징수 현황 및 수정 내용 ▐

구 분	소득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일	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당 초 '20.8월분	근로(A01)	2020.08	2020.08	2020.9.10	1	3,000,000	58,730
	(수정할 내용) 8월에 입사한 직원 1명에 대한 급여 3백만원 및 원천징수세액을 누락하였음을 10월에 확인하여 11월 10일까지 수정신고						
수 정 '20.8월분	근로(A01)	2020.08	2020.08	2020.11.10	2	5,000,000	108,730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2.5/10,000 × 경과일수) ≦ 미납세액 × 10%						
'20.10월분	근로(A01)	2020.10	2020.10	2020.11.10	2	6,000,000	117,460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①신고구분 수정 란에 "○" 표시
-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과 동일하게 기재
-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과 [2. 환급세액 조정]을 새로 작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란을 반으로 나누어 상단에 붉은 색으로 옮겨 기재
- 하단에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검정색으로 기재

※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증가 및 감소분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함(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는 기재하지 않음에 유의)

» 당초 신고('20.8. 귀속 → '20.9.10. 제출)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0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20년 8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3,000,000	58,730					
	연말정산	합 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1	3,000,000	58,730				58,73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3,000,000	58,730				58,730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 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병 등				

» 수정신고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8. 귀속분 수정 → '20.11.10. 제출)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0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20년 8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2	3,000,000 5,000,000	58,730 108,730		2,260			
	가감계	A10	1 2	3,000,000 5,000,000	58,730 108,730		2,260		58,730 110,99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2	3,000,000 5,000,000	58,730 108,730		2,260		58,730 110,990	

● 정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0. 귀속 → '20.11.10. 제출)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0년 10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20년 10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2	6,000,000	117,460					
	가감계	A10	2	6,000,000	117,460				117,460	
수정신고(세액)		A90			50,000		2,260		52,260	
총합계		A99	2	6,000,000	167,460		2,260		169,720	

* (참고) 수정신고(세액) A90 기재금액 계산과정 해설

구 분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등	농특세	가산세	당월조정	소득세 등	농특세
① 당초분	1	3,000,000	58,730		-		58,730	
② 수정분	2	5,000,000	108,730		2,260		110,990	
A90 기재내역	차이(②-①)		50,000		2,260		52,260	

6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반기별 납부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 인원수 20인 이하인 경우, 신청에 의해 반기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매월 납부</td><td>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인세)를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급여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매월 신고·납부</td></tr>
<tr><td>반기별 납부</td><td>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
※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table>
<tr><th>지급시기</th><th>신고 납부시기</th></tr>
<tr><td>1월부터 6월까지</td><td>7월 10일까지</td></tr>
<tr><td>7월부터 12월까지</td><td>다음연도 1월 10일까지</td></tr>
</table>
</td></tr>
</table>

●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작성 방법

<table>
<tr><th>소득구분</th><th>④ 인원 작성방법</th><th>⑤ 총지급액 작성방법</th></tr>
<tr><td>간이세액</td><td>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을 기재</td><td rowspan="4">6개월간 지급한
총지급액을 합산하여 기재</td></tr>
<tr><td>중도퇴사</td><td>반기 중 중도 퇴사자의 총인원 기재</td></tr>
<tr><td>일용근로</td><td>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td></tr>
<tr><td>사업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퇴직소득</td><td>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기재</td></tr>
</table>

● 「⑥ 소득세 등」징수세액 기재

▸ 간이세액표에 따른 6개월간의 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재

반기별 신고서 작성 사례

- 반기 근로소득 지급(5명, 총지급액 30백만원, 소득세 900,000원)
- 반기 중 중도퇴사자 연말정산(1명, 총지급액 10백만원, 소득세 △100,000원)
- 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12명, 총지급액 6백만원)
- 반기 기타소득 지급(2명, 총지급액 1백만원, 소득세 40,000원)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0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20년 6월

원천징수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xxx-xx-xxxxx	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30,000,000	900,000					
		중도퇴사		A02	1	10,000,000	△100,000					
		일용근로		A03	12	6,000,000	0					
		연말정산	합 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 감 계		A10	18	46,000,000	800,000				800,00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 감 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 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2	1,000,000	40,000					
		가 감 계		A40	2	1,000,000	40,000				40,00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 감 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 · 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20	47,000,000	840,000				840,000	

7 홈택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작성프로그램에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작성방식]과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검증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변환방식]이 있음

»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기간

정기분 신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제출월(기한후신고는 지급월)의 다음달 25일부터 신고 가능
이용시간	신고기간 중 06 : 00 ~ 24 : 00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원천세 세금신고 유의사항

- 동일 귀속, 지급연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번 전송한 경우 정기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 신고는 신고 당일이 지나기 전 최종 전송한 자료만을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합니다.
-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신고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정, 기한후 신고의 경우 제출일의 이틀 이내에 제출 가능

직접 작성 방식으로 원천세 신고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고/납부 → ③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 ④ 정기신고 작성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력 → ⑦ 신고내용 저장 → ⑧ 신고서 작성완료 → ⑨ 제출 및 출력



(1) 귀속연월 : 신고서에 해당하는 귀속월을 작성

(2) 연말정산포함 : 연말정산 소득(A04,A05,A06,A26,A44,A46) 입력시 체크

(3) 소득처분신고 : 소득처분 신고시 체크

(4) 환급신청 : 환급액을 당월에 환급받을 경우 체크

(5) 소득종류선택 : 해당 월에 지급된 소득이 있을 경우 전부 체크

(6) 수정신고(세액) : 수정신고와 함께 신고하는 정기신고인 경우에 체크하고,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환급 세액을 가감하여 징수 세액 란에 입력

» 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

다침완선 공어용영신우감도 | 101-82-42933 제출여부 ▸▸▸▸ 재제출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아래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이면 환급세액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간이세액	A01	5	5,000,000	5,000			
중도퇴사	A02	1	10,000,000	-1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	A04						
연말정…	A05						
연말정…	A06						
가감계	A10	6	15,000,000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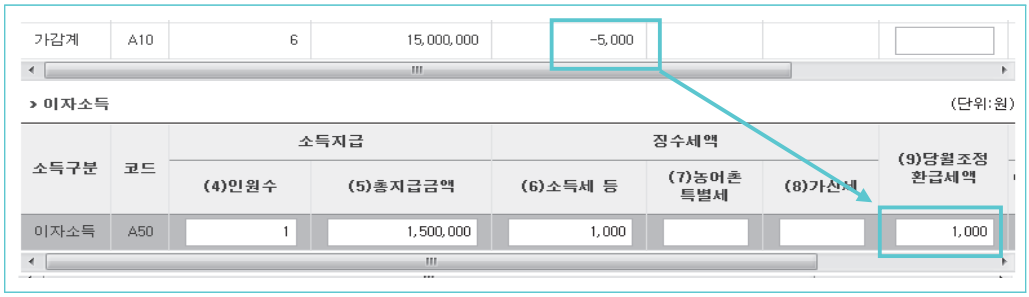
※ 연말정산_합계(A04)에는 연말정산 대상 인원 및 총지급금액만 넣으며,
연말정산_분납신청(A05)에는 분납신청한 인원 및 분납신청금액을 넣고
연말정산_납부금액(A06)에는 연말정산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작성합니다.

› 이자소득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이자소득	A50	1	1,500,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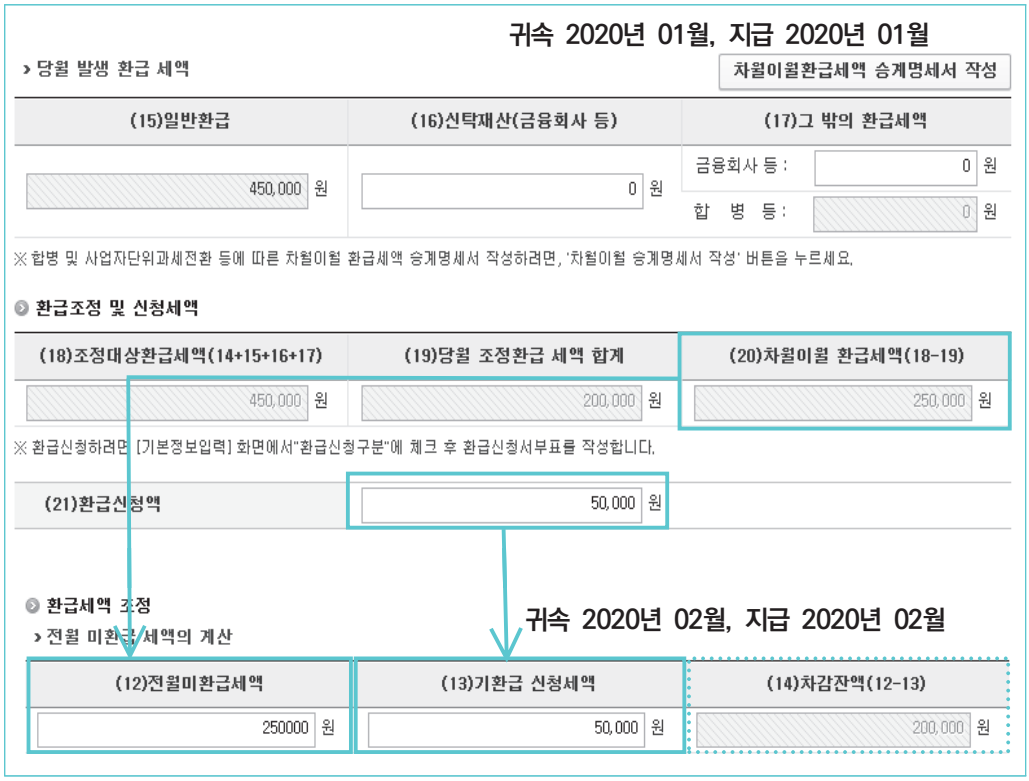
- 타 소득에 조정환급을 해야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9)당월조정 환급세액 란에 기재

※ (9)당월조정 환급세액란은 (+)금액으로 입력하여야 정상적으로 납부 세액에서 차감됨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환급신청 여부에 체크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액란에 환급받을 금액을 반드시 작성(차월이월 환급세액 내의 금액만 환급신청 가능)

이월시킨 환급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12)전월미환급세액에 전월 신고서의 (20)차월이월 환급세액 금액을 입력하고, (13)기환급 신청세액에는 전월 신고서의 (21)환급신청액을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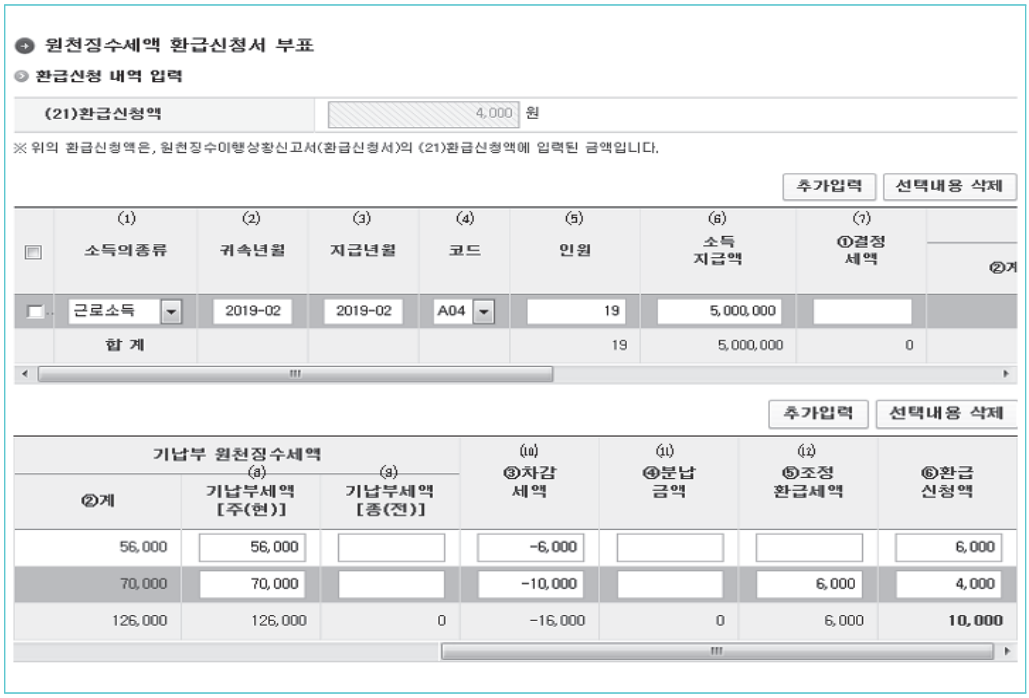


신고서 부표 화면에서 소득종류를 확인한 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

비거주자 항목은 원천징수 대상자 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체크

부표 화면에서 본표에 작성한 소득내용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항목들의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등을 작성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 귀속

환급신청서 부표 화면에서 환급대상이 되는 세액들에 대한 명세를 (21)환급 신청액과 환급신청서 부표의 「⑥환급 신청액」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입력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환급신청 내역 입력

(21)환급신청액 4,000 원

※ 위의 환급신청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의 (21)환급신청액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1) 소득의종류	(2) 귀속년월	(3) 지급년월	(4) 코드	(5) 인원	(6) 소득 지급액	(7) ①결정 세액	②계
	근로소득	2019-02	2019-02	A04	19	5,000,000		
	합 계				19	5,000,000	0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②계	(8) 기납부세액 [주(현)]	(9) 기납부세액 [종(전)]	(10) ③차감 세액	(11) ④분납 금액	(12) ⑤조정 환급세액	⑥환급 신청액
56,000	56,000		-6,000			6,000
70,000	70,000		-10,000		6,000	4,000
126,000	126,000	0	-16,000	0	6,000	**10,000**

(1) 소득의 종류 : 환급금액이 산출된 소득의 종류를 선택

(2) 귀속연월 : 환급세액이 발생한 신고서의 귀속연월을 입력

(3) 지급연월 : 환급세액이 발생한 신고서의 지급연월을 입력

(4) 코드 : 환급금액이 산출된 소득코드를 선택.

(5) 인원 : 환급대상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입력

(6) 소득 지급액 : 환급대상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총지급액을 입력

(7) 결정세액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결정세액 합계액을 입력

(8) 기납부세액[주(현)]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주(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

(9) 기납부세액[종(전)]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종(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

(10) 차감세액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 합계액을 입력

(11) 분납금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5(분납신청)의 징수 세액란의 ⑥소득세 등 금액을 입력

(12) 조정환급세액 : 환급세액에서 자동적으로 차가감되는 같은 세목의 납부금액과 타 세목의 (9)당월조정환급세액을 합하여 입력

●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 「기납부세액 명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다만, 환급대상 소득코드가 수정신고(A90)인 경우에는 첨부대상이 아님

▸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한 후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



Ⅲ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2. 지급명세서 수정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Ⅲ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 상시 전자제출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2 지급명세서 수정

-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 3월	4월 말일	7월 말일
	4월 ~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 9월	10월 말일	다음연도 1월 말일
	10월 ~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1월 ~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1. 근로소득이란
2.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3.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
4.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5. 근로소득금액
6. 인적공제
7. 연금보험료 공제
8. 특별 소득공제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0. 산출세액
11.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12. 특별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13. 월세액 세액공제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1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의 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대가(금액)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대가(금액)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금액)	사업소득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대가(금액)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2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사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사례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월 급여액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 = 6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원임(소득세 6,400, 지방소득세 640)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2,500	2,510	41,63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 80% 선택시 5,630원, 120% 선택시 8,440원을 원천징수

3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

-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계산 구조▐

단 계	결 과	계 산 방 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 소득공제
3단계	(-)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 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기본세율(6~42%)
6단계	(-)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② 특별 세액공제
7단계	결정세액	
8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4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 연간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주요 비과세항목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조문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득세법§12 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12 3 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12 3 아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세법§12 3 자	소득령§12 2~3(일직료·숙직료 등)	×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소득세법§12 3 거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12 3 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12 3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러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현물 급식	×
소득세법§12 3 머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 (월 10만원 이내)	○

●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사회정책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항목에 정의와 과세대상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 업무성과가 우수하거나 특정업무에 뚜렷한 공로 등이 있어 칭찬 또는 장려할 목적으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과세대상) 대회 입상자 포상금, 업무 유공 포상,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 민원응대 우수 포상, 세입징수 포상, 소송수행자(승소) 포상, 아이디어·우수제안 시상, 과태료 징수 포상금, 퇴직·근속자 포상금, 예산 성과금 등
- 다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소법 §12 5호 다목, 소령 §18 ①항 10호)

여비(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3호, 소법 기본 통칙 27-55…23)

-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해 장소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운임 등
  -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에 해당하며, 실비변상 정도 금액인지 여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
    * (비과세) 통상 필요한 범위 내 견학·시찰·연수 비용 및 해외 출장비 등

수당(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소령 §12 3호)

-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보수
  - 비과세수당에 열거된 수당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과세대상) 산불진화 출동 수당, 파견자 인사 교류 수당, 발표·심사 수당 등
    * (비과세) 출산격려금·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자녀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 실비변상 정도의 당직 수당 등(소법 §12 3호)

식사대(소법 §12 3호 러목, 소령 §17조의 2, 법제처 해석 10-453)

- 업무수행 및 특별근무 등에 먹은 음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식사대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량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 (과세제외) 휴일근무·비상근무 급량비, 특근 급량비

활동지원금(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및 6호, 법제처 해석 17-598 외)

- 특정한 활동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금품 등
  - 복리후생비 및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활동지원금은 물건비 성격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격려금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과세대상) 단순 격려·지원금, 휴양시설 이용료 등
    * (과세제외) 동아리·행사 지원, 주택 임차료 지원(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한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연수비·항공료 등

기타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제처 해석 10-453 외)

-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로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물건비 성격에 해당되어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대상) 단순격려금, 건강검진비 등
  * (과세제외) 내부행사 각종 경비, 경품 등

| 과세대상 여부 요약표 |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여부	관련근거
포상금	대회 입상자 포상금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업무유공 포상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		
	민원응대 우수 포상		
	세입징수 포상		
	소송수행자(승소) 포상		
	아이디어·우수제안 시상		
	과태료 징수 포상금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여부	관련근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적용	소법 §12 5호 다목 소령 §18 ① 10호
여비지급	각종 견학·시찰·연수 여비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실비변상 정도 금액인지 여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3호
	해외 출장비 지급		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3호 소법 기본 통칙 27-55…23
수당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소법 §12 3호 머목
	산불진화 출동 수당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비과세 수당에는 미열거)	소법 §20 소령 §38 ① 3호 소법 §12 3호
	파견자 인사교류 수당		
	기타수당 (발표·심사·당직수당)	실비변상 정도의 당직수당은 비과세이나, 발표·심사 수당은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 3호 (서일46011-10136) 소령 §12 3호(비과세)
식사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이나 현물 식사 제공시에는 과세	소법 §12 3호 러목 소령 §17조의 2
	휴일근무·비상근무 급량비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량비는 과세대상 아님	법제처 해석 10-453
	특근급량비		
활동지원금	동아리·행사 지원	예산 지침상 복리후생비는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법제처 해석 17-598
	휴양시설이용료·항공료·연수비	업무관련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연수비, 항공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양시설이용료는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법제처 해석 10-453 소법 §20 소령 §38 ① 3호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여부	관련근거
	주택 임차료 지원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주택임차료 지원)하는 경우 과세제외	소령 §38 ① 6호 단서
	기타 격려금·지원금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 3호
기타	퇴직·근속자 포상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 3호 (법규소득2010-375, 원천세과-436)
	예산 성과금		
	출산격려금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과 합해 월 10만원 이내)	소법 §12 3호 머목
	건강검진비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 3호
	내부행사경품·격려금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각종 경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단순 격려금은 과세대상	법제처 해석 10-453
	행사경비 지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행사경비는 과세대상 아님	법제처 해석 10-453

● **(단체 포상금)**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팀·단체로 지급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2007.1.19)

[부서단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단위로 지급하는 성과 상여금의 경우로서 그 성과 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근로자의 수정신고)**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소득세과-499, 대법원2004두4604).

원천세과-499(2009.9.9)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이후부터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대법원2004두4604(2006.7.13)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갑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5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2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공제한도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6 인적공제

1)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나이 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생계 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배우자 (법정혼인만 인정)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자	제한 없음		
	위탁아동	만 20세 미만		

2)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 분		공제금액	비 고
경로우대(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장 애 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 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공 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7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 보관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 14년부터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로 전환

8 특별 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 금액

구 분	공제금액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 액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제출할 필요 없음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 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 액	

2) 주택자금공제

공제항목	공제비율	개별한도	통 합 한 도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①+②)연 300만원
② 주택마련 저축공제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③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00%	연 300~ 1,800만원	(①+②+③)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연 300만원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사용액 제외)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table>
<tr><th>적용 대상</th><th>원천징수 대상 소득</th></tr>
<tr><td>신용카드 등 사용금액</td><td>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td></tr>
<tr><td>공제금액
(2019년 연말정산 기 준)</td><td>• 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table>
<tr><td>①</td><td>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td></tr>
<tr><td>②</td><td>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td></tr>
<tr><td>③</td><td>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td></tr>
<tr><td>④</td><td>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액 − ① − ② − ③) × 30%</td></tr>
<tr><td>⑤</td><td>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① − ② − ③ − ④) × 15%</td></tr>
<tr><td>⑥</td><t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ⅰ)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⑤ : 최저사용금액 × 15%
ⅱ) 최저사용금액 〉 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⑤ × 15% + (③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40%
ⅲ) 최저사용금액 〉 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 × 15%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40%</td></tr>
</table></td></tr>
<tr><td>공제한도</td><td>연간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 : 연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 : 연간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①, ②, ③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td></tr>
</table>

● '20.4~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의2)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

<table>
<tr><th>구 분</th><th>공제율</th></tr>
<tr><td>신용카드</td><td>30%</td></tr>
<tr><td>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td><td>60%</td></tr>
<tr><td>전통시장·대중교통</td><td>80%</td></tr>
</table>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table>
<tr><th>항 목</th><th>한도 추가</th></tr>
<tr><td>전통시장</td><td>100만원</td></tr>
<tr><td>대중교통</td><td>100만원</td></tr>
<tr><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td><td>100만원</td></tr>
</table>

○ (적용기한) '22.12.31.</td><td>□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 (좌 동)

○ 4~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table>
<tr><th>구 분</th><th>3월</th><th>4~7월</th><th>8~12월</th></tr>
<tr><td>신용카드</td><td>30%</td><td rowspan="3">80%</td><td>15%</td></tr>
<tr><td>현금영수증 등</td><td>60%</td><td>30%</td></tr>
<tr><td>전통시장 등</td><td>80%</td><td>40%</td></tr>
</table>
* '20년 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

○ (좌 동)</td></tr>
</table>

● **(개정이유)**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0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 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사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920,000원 = 72만원 + (2,000만원 – 1,200만원) × 15%

11 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세액공제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공제 한도(50만원~74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최저 50만원)

2)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7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 수		세 액 공 제 금 액
1명	⇨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12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

  ▸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함

1)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구 분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2)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2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3)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 액

4)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구 분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우리사주+지정 15%(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 국가기관 등이 받는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공제증명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기부금*을 받는 국가·지자체·학교 등은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

• (자료제출 일정) 매년 1.1. ~ 12.31.까지의 기부금자료를 다음 해 1.1. ~ 1.7.까지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1.13.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자료제출 절차) 홈택스에 게재된 「기부금서식」*에 자료를 미리 작성한 뒤 기관의 ID로 로그인하여 제출하며,

- 자료를 제출한 후 제출 현황 조회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오류 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서식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제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료제출 유의사항)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생년월일만 기재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 또한 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매뉴얼·FAQ) 영수증 발급기관 자료제출방법 참조

13 월세액 세액공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율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12%

V 기타소득 원천징수

1. 기타소득이란
2. 기타소득 비과세
3. 지자체 공모전 등 개최시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4. 필요경비율 및 세율
5. 원천징수 방법
6.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Ⅴ 기타소득 원천징수

1 기타소득이란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구 분	판 단	소득 구분
강 의 료	고용 관계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원 고 료	회사 사보 게재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2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5호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주요 비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부상을 병수할 수 있다(상훈법 §32).

2)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상금과 부상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법규소득 2010-375(2011.02.18.)

○○○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립기념 우수직원 포상, 예산성과금 포상금, 베스트 상담원 포상금, 아이디어경진대회 우수제안자 포상금,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 정부물품관리유공공무원 포상금, 친절 우수직원 포상금, 업무성과 우수직원 포상금, 불법입찰 신고포상금, 전자계약 우수기관 유공자 포상금)

3)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 연간 총 9백만원(6.30퇴직 전 3백만원 수령)

1.1~6.30. 수령 : 3백만원 → 비과세

7.1.~12.31. 수령 : 6백만원 → 2백만원 비과세, 4백만원 과세(기타소득)

3 지자체 공모전 등 개최시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 공모전 등 개최 결과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법 §21 ①항 1호, 소득통칙 21-0…1).
  -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소득금액(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액)에 세율(20%)을 곱하여 원천징수하며(소법 §129 ①항 6호 라목, 소법 §84 3호),
  - ▸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 적용되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필요경비)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소령 §87 1호 가목).
  -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일 경우만 해당되며, 참가대상이 제한되는 경우는 필요경비 의제 적용되지 않음

법규소득 2009-0317, 2009.9.1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500,000원	400,000원	100,000원	20%	20,000원
250,000원	200,000원	50,000원	과세 최저한	0원
100,000원	특정인만 참가할 경우 필요경비 없음	100,000원	20%	20,000원

- 실무상 수시로 발생하는 다른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및 인적용역 등)과 필요경비 의제 비율(60%)이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경비율 및 세율

● 주요 과세대상별 필요경비율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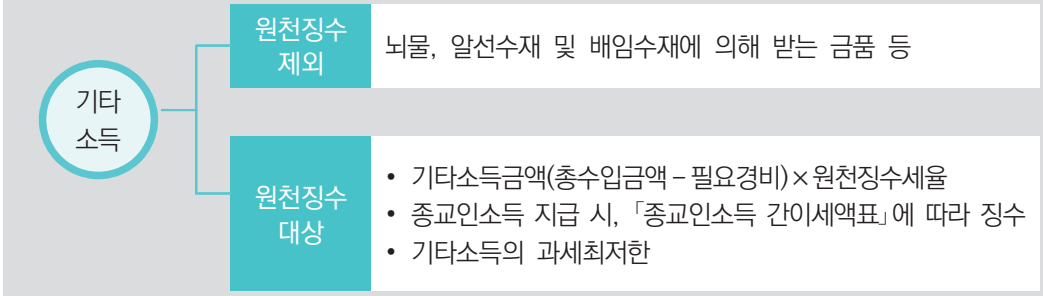
구 분	과세대상	필요경비[주1)]	원천징수세율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	0% (80%[주2)])	20%
보상금·위약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자산 양도 등의 대가	상표권·영업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등	60%	
인적용역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60%	
서화·골동품	개당·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 서화·골동품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또는 제작 후 100년 미만 골동품은 과세 제외)	80% (90%[주3)])	
복권 당첨금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해당 구입금액	20% (30%[주4)])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주1)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입증 시 실제 소요경비 인정
주2)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 및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주3) 서화·골동품 등 양도가액 1억원 이하('20년 이후 양도분)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주4) 복권·당첨금 등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의제필요경비율 축소 내용

구 분	의제필요경비율		
	~'18.3월	'18.4월~	'19.1월~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주택입주지체상금	80%		
• 무체재산권의 양도·대여로 받는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지역권 설정 및 대여소득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80%	70%	60%

5 원천징수 방법



6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례

'20.4월 강연료 등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 기타소득금액 : 125,000원 -75,000원(60% 필요경비) = 50,000원
원천징수세액 : 없음(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Ⅵ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2. 원천징수 의무자
3. 원천징수 방법
4.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Ⅵ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원천징수대상 제외소득

  ▸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인적용역 중 접대부, 댄서 및 유사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봉사료로 원천징수)

2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사례

A보험모집인에게 2020.5월 사업소득 5,000,000원을 지급한 경우 동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할 금액은 얼마인가?

☞ 150,000원 = 5,000,000원×3/100

4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음료배달원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사업자(업종코드 940***)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 적용

사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간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 기본율 77.6%, 초과율 68.6%)

☞ 10,530천원 = {40,000천원 − (40,000천원 × 77.6%)} + {5,000천원 − (5,000천원 × 68.6%)}

● 연말정산 시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때 합니다.